#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 및 주의 시정 요구

제 목 @@@@@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1] 현황과 같이 @ @ @ @ @ @ 29대 712명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119◇◇◇◇◇◇를 7월~8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 [표1] 밀양소방서 @@@@@원 및 119◇★★★★ 원 현황

@@@@@ 개 수	@@@@@원	활동기간	119시민수상 구조대원	활동기간
밀양읍 남성@@@@@ 포함 29개 대	712명	연 중	56명	7월~8월 여름철 운영

#### 2.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의 임무는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②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④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는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①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②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③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는 시·도지사는 @@@@@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2]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119안전센터 승격 현판식 참석, 자연정화 청소 등 법령상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목적으로 19건, 164명 3,377천 원의 소집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일자	항 목	활동내역	인원	수당지급액(천 원)	비고
Я	19건		164	3,377	
2017. *. 28.	▲▲남대	교육훈련	14	151	
2017. *. 30.	□□남성@@ @@@	소방기술경연대회	5	216	
2017. *. 30.	◎◎여대	소방기술경연대회	4	173	
2017. *. 30.	◎◎남대	소방기술경연대회	4	173	
2017. *. 30.	♦♦여대	기술경연대회 참석	3	32	
2017. *. 30.	◆ 여대	기술경연대회 참석	8	86	
2017. *. 18.	◈◈남대	기술경연대회연습	5	54	
2017. *. 24.	<b>◈◈</b> 남대	기술경연대회연습	5	54	
2017. *. 25.	◈◈남대	기술경연대회연습	5	54	
2017. *. 28.	<b>◈◈</b> 남대	기술경연대회연습	5	54	
2017. *. 29.	<b>◈◈</b> 남대	기술경연대회연습	5	54	
2017. *. 30.	<b>♣♣♣</b> 여대	도기술경연대회	3	130	
2019. *. 1.	◎◎남대	◈◈119안전센터 승격 현판식 참석	16	365	
2019. *. 1.	◎◎여대	◈◈119안전센터 승격 현판식 참석	13	296	
2019. *. 1.	▲▲남대	◈◈119안전센터 승격 현판식 참석	15	342	
2019. *. 1.	▲▲여대	◈◈119안전센터 승격 현판식 참석	15	342	
2019. *. 17.	☆ 슈 전문	수난구조장비 주변 환경정비 등	10	114	
2018. *. 14.	♠ ☆ 전문	수상안전활동 및 환경정리	11	493	
2017. *. 5.	◇◇남대	저수지주변순찰 및 자연보호정화청소	18	194	

#### 3. @@@@@ 교육·훈련경비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조제제1항에서는 @@@@@@의 운영과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고 하고 제2항에는 국가는 제1항에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3] "@@@@@ 경비지원 부적정현황"과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과목의 세부 편성목에도 교육·훈련 경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2019. 11. 1. @@@@@ 운영 활동과 상관 없는 밀양소방서 청사 준공식으로 참석한 @@@@@ 원 409명에게 여비로 20천 원씩 총 8,180천 원을 교육·훈련경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3] @@@@@ 경비 지원 부적정 현황

사업명	예산과목	지급일	지출액(천 원)	인원	부적정현황
@@@@@원 활동지원	@@@@@ 지원경비- 교육훈련 경비	2019. 11. 1.	8,180 (2만×409명)	@@@@@ 409명	밀양소방서 청사 준공식 참석 @@@@@원에게 여비 지급

#### 4. @@@@@ 소집수당 및 119◇◇◇◇◇ 활동실비 중복 지급

#### 가. 관계법령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는 시·도지사는 @@@@@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상남도 119〉〉〉〉〉〉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서는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3] 와 같이 119
활동 중인 @@@@@원 \*\*\*\* ○○○ 외 12명에 대해 2017년~2018년 동일한 날짜 및 시간대에 119
활동에 따른 활동실비 13건 697,140원을 지급 받고도 @@@@@ 소집수당 273,600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3] 2017년~2018년 소집수당 및 119<

순 번	대명	성명	년	월	일	시간	인정 시간	소집수당 (원)	◇◇◇◇◇◇ 활동실비	내용
계		13건						273,600	697,140	
1	♦♦여대	000	2017	*	17	09:50 ~11:50	2	21,600	53,280	
2	□□여대	000	2017	*	19	10:00 ~12:00	2	21,600	53,280	
3	□□여대	000	2017	*	19	10:00 ~12:00	2	21,600	53,280	
4	□□남대	000	2017	*	27	13:00 ~15:00	2	21,600	53,280	
5	□□남대	000	2017	*	27	13:00 ~15:00	2	21,600	53,280	
6	□□여대	000	2017	*	30	10:00 ~12:00	2	21,600	53,280	소집수당 및
7	□□남대	000	2017	*	19	10:00 ~12:00	2	21,600	53,280	활동실비 중복 지급
8	□□남대	000	2017	*	19	10:00 ~12:00	2	21,600	53,280	0 7 716
9	□□여대	000	2018	*	20	13:00 ~15:00	2	22,400	54,180	
10	♦♦♦♦□	000	2018	*	20	12:30 ~14:30	2	22,400	54,180	
11	♦♦♦♦□	000	2018	*	20	12:30 ~14:30	2	22,400	54,180	
12	♦♦♦♦□	000	2018	*	29	10:00 ~12:00	2	22,400	54,180	
13	□□여대	000	2018	*	20	14:00 ~15:00	1	11,200	54,180	

밀양소방서에서는 관련규정에는 화재, 안전, 예방 등의 업무에 참석 시 소집소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자체 행사인 교육훈련, 기술경연대회, 안전센터 현판식 참석, 자연 정화활동 등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목적으로 3,377천 원의 소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7년 2월 밀양소방서 종합감사 시 소집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지적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이번 감사 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3,377천 원을 @@@@@ 대원에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조제제1항 및 「경상남도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그와 관련 2019년 교육 및 훈련 경비로 편성된 예산 8,180천 원을 밀양소방서 청사 준공식에 자체 행사에 참석한 @@@@@ 대원에게 일괄적으로 20천 원을 지급한 것과 2017년 ~ 2018년 동일한 날짜 및 시간대에 119〉〉〉〉〉 활동에 따른 활동실비와 @@@@@ 소집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은 명백히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중복 지급된 수당 273천 원은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 ~ 2019년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집수당 3,650천 원은 @@@@@원에게 회수조치하고, 2019년 교육 및 훈련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에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① 밀양소방서장은 @@@@@ 교육훈련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에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 소집수당 목적 외 지급과 소집수당, ◇◇◇◇◇◇ 활동 실비를 중복 지급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 지방소방○ ☆☆☆, 지방소방○ ☆☆☆, 지방소방○ ☆☆☆(현 ◇◇◇◇◇◇)에게 「소방공무원 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또한, 2017년~2019년까지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집수당 3,650천 원은 @@@@에게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 ④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 ·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 신청 소홀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기재부 소유의 밀양시 ●●동 \*\*\*-\*\*번지를 밀양소방서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 6. 14.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는 밀양시가 협의 없이 장기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무상사용 철회 및 유상대부를 밀양시로 통보하였으며,

밀양시는 밀양소방서에 유상대부 통지를 하고 20\*\*. 1. 1.부터 20\*\*. 12. 31.(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밀양소방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사용료를 밀양시에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밀양시는 해당 국유지를 20\*\*. 1. 15. 기재부로부터 매입하여 밀양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되었다. 또한 밀양소방서에서는 20\*\*. 9. 20. 밀양소방서 새 청사 신축으로 이전하면서 밀양시에 대부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일부인 11,373천 원을 환부 받았으며, 20\*\*. 11. 11. 구 밀양소방서 건물에 대해 @@119출장소 청사로 3년간(20\*\*. 9. 21.~20\*\*. 9. 20.) 사용한다고 밀양시에 공문으로 무상사용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20\*\*. 11. 19. 밀양시로부터 무상사용 계약 체결을 통보 받았다.

####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 운영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제2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제4조제1항 제6호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에 대해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 1. 15. 밀양시 소유로 이전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밀양소방서인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 허가 신청 후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 '연도별 대부료 납부현황'과 같이 구 밀양소방서로 사용하고 있었던 밀양시 ◎◎동 \*\*\*-\*\*번지 소유권이기재부(국)에서 20\*\*. 1. 15. 밀양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 공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 신청하여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무상사용에대한 밀양시 협의 등 무상사용 신청 없이 20\*\*년 40,293천 원 20\*\*년 28,931천 원 등총 69,224천 원의 사용료를 밀양시에 납부하여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표] 연도별 대부료 납부현황

재산명	소재지	사용면적	연간대부료 납부액		소유자	현황
			20**년	40,608천 원	기재부(국)	자산관리공사 유상사용 결정
		20**년 40,293천 원			공공용으로 무상사용	
구 밀양소방서 청사	밀양시 ◉●동 ***-**	부지 1,758㎡ 건물 1,171㎡	20**년	28,931천 원 기존 40,304천 원 (청사 이전 대부 해지 요청 11,373천 원 환부 받음)	밀양시 (201*.1.15. 소유권 이전)	가능함에도 밀양소방서에서는 무상사용 신청 없이 사용료를 계속 납부함

밀양소방서에서는 예전부터 국유지 소유의 땅을 무료로 밀양소방서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년부터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밀양시에서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료 대부 통지를 하였고 밀양소방서에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사용료를 밀양시에 납부하고 있었다.

밀양시소방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 1. 15. 당시 공유재산 담당자는 위 법규에 대한 내용과 밀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유상으로 계속 납부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밀양소방서는 매년 사용료 납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면서 국유지에서 밀양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그에 따라 무상허가에 관한 사항을 밀양시와 협의하였다면 20\*\*. 1. 15. 밀양시 이전 이후에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였음에도 밀양시와 무상사용 협의가 전혀 없이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세출예산 운영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소홀히 하여 20\*\*년 ~ 20\*\*년 밀양시에 납부한 사용료 총 69,22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주의 요구

제 목 현장 활동장비, 피복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2017년~2019년 동안「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에 따라 소방 현장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소방공무원법」제18조,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및 「소방공무원복제세칙」에 따른 피복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2019년도 본서 청사를 신축하면서 심신안정실 공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

#### 2. 관계법령

「지방계약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되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발주 노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연간 사업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장활동 물품 구매 및 소방피복 구입비 등을 집행 하면서 동일시기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통합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정보 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2019년도 소방 활동장비 구입으로 6건, 29,55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소방 활동 장비 구입으로 3건, 25,881천 원을, 2017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으로 5건 20,092천 원을, 2018년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으로 3건 22,237천 원을 2019년 본서 심신안정실 물품을 구매하면서 4건 28,984천 원, 2017년~2019년 동안 5개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총 126,751천 원을 21건으로 각각 분할 발주・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으로 다수 업체의 공정한 참여와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구입내역	계약일자	집행금액	계약자
	Я	21건	126,751	
	소계	6건	29,557	
	현장 활동보조장비 구입 (패스트밸트, 이동식추락방지 4종)	2019.*.27.	4,944	$\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
자산 및	현장 활동보조장비 구입 (충전원형톱 등 3종)	2019.*.24.	10,769	
물품취득비	2019년 현장활동장비(구조 및 보조장비) 구입비 지급	2019.*.24.	6,145	$\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
	2019년 현장활동장비(구조 및 보조장비) 구입비 지급(방열복 외 6종)	2019.*.24.	7,699	

	소계	3건	25,881	
자산 및	구조장비(구조용 조끼) 구입비 지급	2018.*.27.	4,880	$\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Diamond$
물품취득비	2018년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지급	2018.*.29.	19,701	====
	지휘조사팀 현장활동용 헬멧 구입비 지급	2018.**.15.	1,300	(주)☆☆
	소계	5건	20,092	
	구급대원 현장활동 조끼 구입비 지급(피복)	2017. **. 19.	1,000	밀양소방서NH
	소방공무원 피복(동 활동복) 구입비 지급	2017. **. 13.	9,500	(주) ♣ ♣ ♣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피복(신형 방한복) 구입비 지급	2017. **. 27.	3,810	444
	소방공무원 피복(동근무복 셔츠-내근부서) 구입비 지급	2017. **. 28.	1,295	444
	소방공무원 피복(동근무복-내근근무자) 구입비 지급	2017. **. 8.	4,487	\$ \$ \$ \$
	소계	3건	22,237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피복(활동화) 구입비 지급	2018. *. 9.	5,915	◎◎지방조달청
자구신니미	소방공무원 피복(근무복) 구입비 지급	2018. *. 9.	6,318	◎◎지방조달청
	소방공무원 피복(활동복) 구입비 지급	2018. *. 9.	10,004	◎◎지방조달청
	소계	4건	28,984	
	본서 심신안정실 물품(수의)구매 대금 지급	2019. **. 1.	6,512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서 심신안정실물품(소파 등 3종) 조달대금지급	2019. **. 8.	4,232	◎◎지방조달청
출품쉬득비   	본서 심신안정실물품(체성분분석기) 조달대금지급	2019. **. 13.	3,619	◎◎지방조달청
	본서 심신안정실(안마의자 등) 조달대금지급	2019. **. 15.	14,621	◎◎지방조달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물품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소방서 계약담당자는 연간 사업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방현장 활동장비 구매,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시 연간 소요량에 대한 산출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추진했어야 함에도 2017년~ 2019년에 총 21건 126,751천 원을 집행하면서 통합 발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 절감 노력 없이 필요 시 마다 소방현장활동 장비 및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여러 건 나누어 분할 발주 구입하여 다수 업체의 공정한 참여와 예산 절감의 노력 없이 부적절하게 계약을 체결·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령 연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자의 신청사 이전 준비 등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이 이 건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고, 또한 소방장비의 특성상 제품 성능 보장 및 A/S 등사후 관리의 이점을 위해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에서는 소방활동 장비 및 물품(피복) 구매를 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 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 지방소방○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 · 주의 요구

제 목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2017~2018년 세출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하여 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합하게 집행하였다.

####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은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4-1. 시설비에따르면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문화재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지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는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표] "시설비 낙찰차액 발생 및 집행 현황"에서와 같이 '17년~'18년 시설비낙찰차액(7,859천 원)으로 세출예산 목적 외의 "소방용수시설 수리 및 ◈◈지역대저수조 수리 등"등 3건. 7.859천 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시설비 낙찰차액 발생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131015	HOR	71 = 701	1 L=L ¬ 01	1 L = L T L OU	부당사용		
회계연도	사업명	기초금액	낙찰금액 	낙찰잔액	용 도	사용액	
계		82,511	74,651	7,859	3건	7,859	
2017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18,000	15,572	2,428	소방용수시설 수리 및 @@지역대 저수조 수리	2,428	
2017	소방서 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31,654	30,488	1,166	@@센터 트렌치 설치	1,166	
2018	@@지역대 청사환경개선 공사	32,857	28,591	4,265	광역상수도 연결 공사 및 오수받이 설치	4,265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소관부서에서는 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추진 시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없이 시설비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으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장은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으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 지방소방○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는 세출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는데도 전 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집행할 수 없으며 전 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없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다만, 회계연도 말에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 간지급 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지급된 선급금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1월 20일까지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는 2017년 12월분 공공조달 유류카드 난방유 사용금액 등 2,241천 원, 2018년 12월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유류카드 사용금액 등 5,323천 원 등 4건의 경비 14,214천 원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였다.

[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내역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지급일	집행과목	집행내역	집행액
0017	2018-1-5	770 <b>a</b> u	2017년 12월 후반기 공공조달 유류카드 난방유 사용금액 지급	2,421
2017	2018-1-5	공공운영비 :	2017년 12월 후반기 공공조달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유류카드 사용금액 지급	4,285
2019	2019-1-8	- 공공운영비	2018년 12월 후반기 공공조달 유류카드 난방유 사용금액 지급	2,185
2018	2019-1-8	55±8U	2018년 12월 후반기 공공조달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유류카드 사용금액 지급	5,323
계	4건			14,214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밀양소방서 ○○○○○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제7조, 「지방 회계법」제6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된 경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장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 지방소방○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및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및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라 상반기(6월 30일), 하반기(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1항에 의하면 소방정·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하고,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로 구분하며, 근무성적의 총 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하고, 아래 [표 1]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배점'과 같이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으로 한다.

#### 【표 1】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배점

평정요소	배 점	세부평정요소 및 배점
근 무 실 적	10점	① 직무의 양(3점), ② 직무수행의 정확성(4점), ③ 직무수행의 신속성(3점)
직무수행능력	10점	④ 지식 및 기술(3점), ⑤ 이해력 및 판단력(2점), ⑥ 기획력 및 창의력(2점) ⑦ 관리능력 및 지휘력(3점)
직무수행태도	10점	8 성실성 및 규율 준수(3점), 9 친절성 및 협조성(3점), 10 적극성 및 책임성(4점)

#### 3. 위법부당사항

또한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제1차 평정자인 ◇◇◇◇◇ ☆☆☆은 ◇◇◇산센터 지방소방○ ☆☆☆의 지식 및 기술(3점)에 대하여 평정점이 없는 2.75점으로 평정하였고, 제1차 평정자인 ○○○○○장 ☆☆☆은 ○○○○○ 지방소방○ ☆☆☆의 직무수행의 신속성(3점)에 대하여 평정점이 없는 1.50점으로 평정하는 등 소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부적정하게 평정한 사실이 있다.

【표 2】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현황

시기	구 분	계 급	성 명	평정요소별 배점 및 평정점수	부적정 평정점	비고
		TIHLA HLO		평정요소 : 지식 및 기술(3점)	0.757	
2017년	근무성적평정	지방소방()	* * *	평정점수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75점	
하반기	L 1 0 100	TIHEA HEA		평정요소 : 지식 및 기술(3점)	O E저	
		지방소방○	* * *	평정점수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5점	
			***	평정요소 : 지식 및 기술(3점)	0 7F X	
2018년	근무성적평정	지방소방()		평정점수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2.75점	
상반기	L10700			평정요소 : 직무의 신속성(3점)	1 50전	
		지방소방()	* * *	평정점수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1.50점	

밀양소방서 ○○○○○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근무성적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에 없는 평정점을 부적정하게 평정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장은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현,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 · 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 등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업무를 35건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3호에 따르면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는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등 3개소에 대하여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 등 23개소는 변경 예정일 확인 없이 신고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표 1. 품명 변경 등 신고 현황 】

		제조소	변경예정일	설치		비고
연번	대상명	등 구분	신고일	(또는 변경) 허가번호	부적정 내용	(만원)
1	( <del>?</del> ) <b>* * * *</b>	일반 취급소	2017. **. 1. 2017. **. 1.	**-***-***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음	과태료 (30)
2	㈜����� 제*공장	옥내 저장소	2017. <b>**</b> . 22. 2017. <b>**</b> . 22.	**-***-***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음	과태료 (30)
3	㈜▲▲▲▲	옥내 저장소	2019. *. 17. 2019. *. 16.	**-***-***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음	과태료 (30)
4		옥외탱크 저장소	- 2017. *. 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5	(F) * * * * *	옥외탱크 저장소	2017. *. 8.	**-***-***	- 변경예정일 미확인	
6	㈜����	옥외탱크 저장소	2017. *. 19.	**-***-***	- 변경예정일 미확인	
7	㈜����	일반 취급소	2017. *. 19.	**-***-***	- 변경예정일 미확인	
8	㈜����	일반 취급소	2017. *. 24.	**-***-***	- 변경예정일 미확인	
9	(₹) \$\dagger \dagger \	이동탱크 저장소	2017. *. 8.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0	㈜���� 제*공장	일반 취급소	- 2017. *. 13.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1	㈜���� 제*공장	옥외탱크 저장소	2017. *. 13.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2	●●●●(주)	이동탱크 저장소	2017. *. 15.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3		옥내 저장소	2017. *. 14.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4	(주)@@@@	이동탱크 저장소	2017. **. 16.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5	(주)@@@@	이동탱크 저장소	2017. **. 26.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6	(주) ♣ ♣ ♣ ♣	옥내 저장소	2018. *. 2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7	(주) ♣ ♣ ♣ ♣	일반 취급소	2018. *. 2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8	(주)@@@@	이동탱크 저장소	2018. *. 10.	**-***-***	- 변경예정일 미확인	
19	(주) ♣ ♣ ♣ ♣	옥외탱크 저장소	2018. *. 2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0	දු දු දු දු දු	옥외탱크 저장소	2018. *. 9.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2	㈜정석케미칼	옥내 저장소	2018. **. 18.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2	밀양◉◉ ***동지점	옥내탱크 저장소	2018. **. 8.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3	★★★★(주)	옥내 저장소	2018. **. 2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4	★★★★(주)	일반 취급소	2018. **. 27.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5	★★★★(주)	일반 취급소	2019. *. 26.	**-***-***	- 변경예정일 미확인	
26	밀양소 <u>쇼</u> 소소시설	지하탱크 저장소	2019. *. 3.	**-***-***	- 변경예정일 미확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무담당자는 신고서의 변경 예정일이 기간 내에 신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밀양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 소홀에 대해서 연찬 부족, 인사이동 및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 행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향후 업무 시 제반 서류를 철저히 확인·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 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 예정일을 표시하지 않은 신고서를 보완 요구 없이 수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① 밀양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를 하면서, 기간 내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 예정일 확인을 소홀히 한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현 경북소방), 지방소방○ ☆☆☆, 지방소방○ ☆☆☆에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 예정일 확인을 소홀히 한 ◎◎◎◎◎ 등 23개소는 변경일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시정 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가능 면적 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가능 면적 산정 확인 및 현장방염 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의 부분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설치(완공)신고서에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가 표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도 밀양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1] '방염가능 면적 산정 현황'과 같이 ◈◈◈◈◈는 방염가능 면적 산정 시 영업장 천장과 내화구조의 벽체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창문 등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을 하였으며, ♣♣♣♣♣와 ����의 경우 방염가능 면적을 영업장의 충별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모든 충을합하여 산정한 사실이 있다.

【표1. 방염가능 면적 산정 현황】

대상명	법령상 산정면적(㎡) (천장 + 내화벽체)	면적산정 현황(㎡)	부적정 내용	비고
<b>* * * * *</b>	(358 + 240) × 0.3 = 179.4	(358 + 303.2) × 0.3 = 198.36	- 영업장의 창문과 개구부 등의 면적을 산입하여 계산	
* * * * * *	2층: (210.68 + 146.51) × 0.3 = 107.16 3층: (210.68 + 136.45) × 0.3 = 104.14	(210.68 + 146.51 + 210.68 + 136.45) × 0.3 = 211.3	- 2층과 3층의 방염가능면적 산정을 합산하여 계산	
444	1층: (116.48 + 144.34) × 0.3 = 78.25 2층: (116.48 + 144.34) × 0.3 = 78.25 3층: (108.66 + 103.72) × 0.3 = 71.81	(116.48 + 144.34 + 116.48 + 144.34 + 108.66 + 130.72) × 0.3 = 228.3	- 1층, 2층 및 3층의 방염가능면적 산정을 합산하여 계산	

밀양소방서 ○○○○○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 기준이상으로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방염가능 면적 산정을 영업장의 천장과 내화구조의 벽체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창문 등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을 하였으며, ♣♣♣♣♣와 ♠♠♠♀의 경우 방염가능 면적을 영업장의 층별로 산정하여야하지만 모든 층을 합하여 산정한 사실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방염가능 면적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창문 등의 면적이 포함되었고, 층별로 산정하여야 하나 모든 층을 합하여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에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소 관 기 관 밀양소방서(○○○○)

조 치 기 관 밀양소방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밀양소방서 ○○○○○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대상물(8개소), 2급 대상물 (506개소), 3급 대상물(345개소) 총 859개소 대상 중 841개 대상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관계법령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2항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지정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

밀양소방서는 아래【표】"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현황"에 의하면,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하나, ◎◎119안전센터 14개소(2급 6개소, 3급 8개소), ◎◎119안전센터 1개소(3급 1개소), ☆☆119안전센터 3개소(2급 2개소, 3급 1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현황

연번	건물명	주 소	구분	자료조사 일자	실시여부	관할
1	****	◉◉송림길**	2급대상	20**-04-03	미실시	••
2	***	문화중앙길 *	2급대상	20**-12-22	미실시	<b>\$</b>
3	*****학교	내일중앙길 **	2급대상	20**-12-15	미실시	••
4	***	가례로 ***	2급대상	20**-10-04	미실시	<b>\$</b>
5	***(주)	사포산단중앙로**	2급대상	누락	미실시	••
6	****	중앙로 ***-*	2급대상	20**-09-23	미실시	••
7	***	●●강변로**	2급대상	20**-04-03	미실시	••
8	***	◉●중앙로**	2급대상	20**-12-14	미실시	••
9	***	미리벌중앙로*길**	3급대상	20**-08-16	미실시	••
10	***	밀양중*길*-*	3급대상	20**-12-14	미실시	••
11	***	약산로 **-*	3급대상	20**-12-05	미실시	••
12	****	북성로7길 **	3급대상	20**-05-26	미실시	••
13	*****	터미널*길**	3급대상	20**-08-22	미실시	••
14	****	북성로 **	3급대상	20**-05-08	미실시	••
15	***	북성로*길 **	3급대상	누락	미실시	••
16	****	중앙로**	3급대상	20**-09-08	미실시	☆☆
17	****	남천강변로 *	3급대상	20**-08-14	미실시	••
18	****	사명로*-**	3급대상	20**-03-22	미실시	<b>\$</b>

밀양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2항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지정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는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미숙으로 미실시한 대상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밀양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 ☆☆☆ (현, □□□□□□□), 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현, □□□□□□□□), 지방소방○ ☆☆☆, 지방소방○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실시한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시고(시정),
- ③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